

의안번호	제 178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 숙 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4월 9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
----------	-----

발의연월일: 2019년 4월 9일

발 의 자: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박성원, 이의영, 임기중,
황규철의원

1. 제안이유

2018. 3. 27.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명칭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생활지도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27호

2019. 3. 21. ~ 2019. 4. 5.(특이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를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분석평가”을 “성별영향평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청</u> <u>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u>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p>	<p><u>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u> <u>조례</u></p> <p>제1조(목적) ----- 「<u>성별영향평가법</u>」 제10조의2 ----- ----- ----- -----.</p> <p>제2조(<u>특정성별영향평가</u>) ① --- ----- ----- 「<u>성별영향평가법</u>」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u>특정성별영향평가</u>----- ----- <u>성별영향평가위원회</u>----- ----- <u>특정성별영향평가</u>----- -----.</p>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 성별영향평가 -----
----- 성
별영향평가 -----

2. 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 특정성별
영향평가-----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별영
향평가책임관-----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생략)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생략)

-----.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성별영향평가-----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성별영

향평가-----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총사업비 : 1,200천원
 - 위원수당 : 10명(당연직 위원 5명 제외), 1,000천원
 - 용 품 비 : 5종, 20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